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54

발의연월일: 2025. 3. 21.

발 의 자:강유정ㆍ김우영ㆍ진선미

박용갑 • 문정복 • 이건태

양부남 • 이춘석 • 박해철

임오경 · 김한규 · 민형배

박희승 • 전용기 의원

(14위)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기 방자치단체 또는 예술지원기관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 이 예술인을 차별하거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예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일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예술지원사업 이외에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루어지는 예술 활동은 현행법상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해서는 예술 활동의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과 예술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예술인을 국민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소양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 재정의함(안 제2조제2호).
- 나.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외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예술지원기관과 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예술 활동을 예술지원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행위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포함함(안 제2조제4호 및 제13조).
- 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42조 신설).

법률 제 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국가를"을 "국민의"로, "정치적으로"를 "정치적 소양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제6호에 따른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를 "다음 각 목의"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가목 중 "제7조제2항을"을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을"로 한다.

- 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제 6호에 따른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 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
- 나. 국가기관등 또는 제6호에 따른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과 직접 관련된 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 관련 사업 제5조의 제목 중 "국가기관등의"를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기관등은"을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

관은"으로,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를 "보호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국가기관등은"을 각각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부터 제7항(종전의 제6항)까지 중 "국가기관등은"을 각각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⑧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민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 과 정에서 이 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과 예술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예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제1항제5호 중 "변경하거나"를 "변경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등"으로 한다.

제41조를 제43조로 하고,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표현의 자유 및 권리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 및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형법」 제123조 또는 제314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 2. 제9조를 위반한 자
-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
- 4.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자
- 5.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2
사람을 말한다.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기·
하여 <u>국가를</u> 문화적·사회	<u>국민의</u>
적 · 경제적 · <u>정치적으로</u>	<u>정치적</u>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	<u>소양을</u>
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	
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	
을 하는 사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예술지원사업"이란 <u>국가기</u>	4 <u>다</u>
관・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	<u>음 각 목의</u>
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제6	
호에 따른 예술지원기관이 예	
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 5. ~ 9. (생략)
- 10.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 | 10.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행ㅣ 위

나. ~ 마. (생 략)

제5조(국가기관등의 책무) ① 국 제5조(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 <u>가기관등은</u> 예술인의 예술창작 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

- 가.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제6호에 따른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예산 또는 보조 금 등을 지원하는 일체의 사업
- 나. 국가기관등 또는 제6호에 따른 예술지원기관이 예술 활동과 직접 관련된 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예술 관련 사업
- 5. ~ 9. (현행과 같음)

- 가.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 나. ~ 마. (현행과 같음)

관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u>국가기관등은</u> 예술을 검열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예술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예술지원 사업의 결정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u>국가기관등은</u>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예술인의예술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신 설>

- ④ <u>국가기관등은</u>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⑤ 국가기관등은 예술인에 대

<u>호하여야</u>
②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
관은
③ <u>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u>
관은
· ④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
관은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
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
관은
⑥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

한 성희롱ㆍ성폭력을 금지ㆍ예 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 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야 하다.

⑥ 국가기관등은 예술지원기관 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 으며 예술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 다.

<신 설>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제7조(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 ①·② (생 략) <신 설>

관;	<u> </u>				
<u>7</u>	<u>국가기</u>	관등	및	예술기	지원기
<u>관</u>	<u> </u>				
	_				

⑧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 관은 「민법」 및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예술인과 체결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이 법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과 예술 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예 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국 제13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

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4. (생 략)
-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생 략)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
5
<u>변경하거나</u>
<u>변경하거나</u>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등

<신 설>	<u>다.</u>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u> </u>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 또는 3항을 위반한 자
	<u>2.</u> 제9조를 위반한 자
	<u>3.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u>
	<u>4. 제14조제4항을 위반한 자</u>
	<u>5.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자</u>
<u>제41조</u> (과태료) (생 략)	<u>제43조</u> (과태료) (현행 제41조와
	같음)